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

발 의 자 : 최재옥 의원외 6인

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5년 12월 6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9일

제안 이유

- 이 조례의 각종 위원회중 “충청북도발전협의회”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를 도의 행정기구에 맞도록 혁신분권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조례명을 「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관계법률 제정에 따라 “신행정수도”를 “행정중심 복합도시”로 현실에 맞게 변경(안 제1조)
-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간사는 혁신분권과장으로 함.(안 제6조)

-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

□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 은,
협의회 운영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도록 변경하고,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